

EU가맹국의 제조물책임법 입법현황 (I)

공동집필 · 강창경 연구위원 한국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실
하태웅 변호사 법무법인 유·러

< 목 차 >

1. 영국
2. 독일
3. 프랑스
4. 그리스
5. 이탈리아
6. 룩셈부르크
7. 덴마크
8. 포르투갈
9. 네덜란드

EU지침은 회원국에 대해 지침이 성립한 1985년 7월 25일부터 3년 이내에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국내법을 제정하여 시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1987년 5월 제정, 1988년 3월 1일 시행), 이탈리아(1988년 5월 제정, 1988년 7월 30일 시행), 그리스(1988년 3월 제정, 1988년 7월 30일 시행)만이 기한 내에 국내입법을 완료했을 뿐이다. 이처럼 12개 회원국 중 9개국이 기한 내에 국내입법화를 할 수 없었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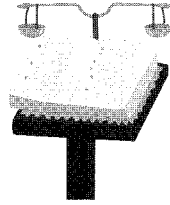
주요 이유는 EU지침의 세 가지 선택조항에 관한 국내조정에 많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이 선택조항에 대한 각 국의 대응과 현재의 입법현황은 각 국가마다 달리하고 있다.

1. 영국

영국은 EU지침에 따라서 1987년 5월 15일에 [소비자보호법] (Consumer Protection Act 1987)을 제정하여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보호법 제1장이 제조물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보호법은 기본적으로 무과실책임의 원칙을 제조물책임에 도입하고 있다. 다만 제조물책임에 대한 종래의 계약책임이나 과실책임의 원칙에 근거한 불법행위책임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하는 한편, 이와 같이 전통적으로 적용된 책임원칙도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무과실 책임과 함께 제조물책임의 근거로 적용하고 있다.

1) 무과실책임의 원칙

종래 영국에서는 피해자가 제조자나 공급업자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다. 그러나 본 법에서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취함으로써 피해자는 제조자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제2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자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해 제조자의 고의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결함 있는 제조물을 제조한 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과시키고 있다.

2) 제조물의 정의

제조물이라 함은 동산 및 전기를 말하며, 구성 부품이나 원재료 등 다른 제조물을 구성하는 것도 포함된다. 다만, 공업적 가공을 거치지 않은 수렵물이나 제1차 농산물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책임주체

제조자는 EU지역 외의 국가로부터 수입업자 및 스스로 제조자로 표시한 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제2조). 제조자란 ①그 제조물을 제조한 자 ②아직 제조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채굴 또는 추출된 물질에 대해서는 그 물질을 채굴 또는 추출한 자 ③아직 제조, 채굴, 추출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부가된 공업적 또는 기타 가공에 의해 제조물의 본질적 특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공을 한 자를 말한다.

일정한 경우 공급자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그리고 동일한 손해에 대해 2인 이상의 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원제조자 뿐만 아니라 스스로 제조자로 표시한 자와 수입업자도 책임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들 모두를 제조물책임의 주체로 간주함으로써 소비자피해구제나 분쟁해결에 있어서 보다

더 실제적이고 타당성 있는 해결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결함

제조물의 안전성이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결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된다. 여기서 안전성이라 함은 해당 제조물에 내포되어 있는 부품의 안전성 및 재산상 피해의 위험과 관련한 안전성, 그리고 사망 또는 신체적 피해의 위험과 관련된 안전성을 포함한다. 또한 안전성에 대한 일반인의 기대가능성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고려해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제조물의 판매방법, 목적, 형태, 표시의 사용, 지시·경고, 해당 제조물에 대해 또는 해당 제조물과 관련해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사항, 해당 제조물이 제조자로부터 타인에게 공급된 시점 등이다. 그러나 그 시점 이후에 공급된 제조물의 안전성이 문제의 제조물의 안전성보다 크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5) 손해

손해란 사망, 신체 상해(Personal Injury) 부동산을 포함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말한다. 신체상해는 모든 질병 및 기타 모든 육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의 훼손을 포함한다. 그러나 제조물에 부합된 제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해를 포함해 제조물 자체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재산상의 손해인 경우에는 사적인 사용, 점유, 소비가 의도되어 있는 제조물의 사적인 사용, 점유, 또는 소비 시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만 제조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사업자가 결함 컴퓨터를 사무용으로 구입하여 사용중 신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본 법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화재가 발생하여 사무소에 피해를 준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다. 적용이 제외되는 종류의 피해에 대하여는 계약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 등을 추궁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275파운드 이하의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는 제조자는 면책된다. 신체상해를 수반하지 않는 소액청구를 배제하기 위한 규정이다.

손해배상액이 275파운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배상이 인정된다. 275파운드 이하의 손해인 경우에는 계약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 등을 추궁할 수밖에 없다.

6) 항변

제조자에게 인정되는 항변사유로는 ①결함이 법령에 근거해서 과해진 요건 또는 공동체 의무의 준수에 기인하는 경우 ②제조물을 공급하지 않은 경우 ③제조물의 공급 그 자체가 영업으로써 이뤄진 것이 아니고 이익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④결함이 관련시시점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⑤관련시점의 과학 및 기술지식의 수준에서 분쟁 제조물과 동종의 제조물의 제조자에 대해 제조물에 존재하는 결함의 발견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⑥결함이 2차 제조물의 결함이며 또한 그 결함이 전적으로 2차 제조물의 설계나 2차제조물의 제조자의 지시에 기인하는 경우 등이 있다.

상기 ⑤의 개발위험의 항변은 “과학 및 기술지식의 수준에서 분쟁제조물과 동종 제조물의 제조자에 대해 제조물에 존재하는 결함의 발견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여 EU지침에 비해서 제조자의 입장을 보다 더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공

급(Supply)에 대해서는 제46조에 해석규정이 있다. 제46조에 따르면 공급에는 물품의 판매, 임대, 할부판매, 교환, 증여 등이 포함된다. 영업으로써 선물을 준 경우, 가령 선전을 위하여 선물을 준 경우에는 이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다.

관련시점이란 전기의 경우에는 발전된 시점, 즉 송전이나 배전되기 전의 시점을 의미하고, 기타 제조물과 관련하여 피소구자가 제2조제2항의 적용을 받는 자 즉 제조자, 스스로 제조자로 표시한 자, 수입업자인 경우에는 그 자가 제조물을 제3자에게 공급한 시점을, 피소구자가 동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 가령 소매업자 등의 판매자인 경우에는 그 제조물과 관련하여 동항의 적용을 받는 자 즉 제조자 등에 의해 그 제조물이 최종적으로 공급된 시점을 의미한다. 그러나 동법은 책임의 최고 한도액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태도는 제조물의 결함에 따른 소비자보호에 보다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고 볼 수 있다.

7) 소멸시효 및 제소기간

제조물책임소송은 소송원인이 발생한 날 또는 원고가 소송원인이 되는 사실, 피해가 결함에 기인한다는 사실 및 피고의 특징에 대해 인식한 날 중 후에 도래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제소할 수 없다. 그리고 제품이 시장에 유통된 이후 10년이 경과하면 제조물책임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8) 책임배제금지

동법 제7조에서는 어떠한 계약조항이나 통지 또는 규정으로써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 또는 피해자의 특별 이해관계인에 대해 제조물책임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